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83 발의연월일: 2020. 6. 15.

발 의 자:김민기·김병기·이탄희

김영호 · 김병욱 · 이재정

서동용 · 김교흥 · 이소영

이규민 • 박완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300세대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하는 대신 학교용지를 조성·개발 또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오피스텔을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학교 수요에 대비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대규모 주거용 오피스텔 단지 개발사업을 허가한 사례가 있어, 오피스텔 개발사업도 현행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공동주택 범위에 「주택법」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

스텔을 포함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학교 수요 에 대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법률 제 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동주택"을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오피스 텔 개발사업의 경우 제3조, 제4조, 제4조의2 및 제5조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개발·확보, 경비의 부담, 학교시설에 관한 특례 및 부담금의 부과·징수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은 개발사업(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이 법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	2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	
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	
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	
나 <u>공동주택</u> 을 건설하는 사업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
을 말한다.	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
	스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 저. (생 략)	가. ~ 저.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